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별척조항의 법정형 정비〉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9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
3. 회부연월일 : 2025. 5.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이라는 법정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은 불법행위를 한 협동조합 임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Ⅲ. 검토의견

1.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

개정안은 조합 등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조합 등의 재산을 처분할 때 부과하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併科) 가능)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併科) 가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138조(벌칙) ----- ----- ----- ----- ----- -----3천만원 ----- -----.

국회 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제45조제2항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기간에 상응하여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즉, 국회 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징역형 1년 이하”에 상응하는 범죄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형(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로, “징역형 2년 이하”에 상응하는 범죄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형(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로, “징역형 3년 이하”에 상응하는 범죄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형(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징역형 5년 이하”에 상응하는 범죄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형(벌금형)을 “5천만원 이하”로 하도록 입안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표 1]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법정형(벌금형) 입안 기준

징역	벌금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자료: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 지침)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벌칙 규정 중 이러한 법정형(벌금형) 입안 기준과 차이가 있는 현행법 제138조1)의 벌금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형(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징역형(3년 이하의 징역형)에 상응하여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앞서 설명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의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조합 등의 자금·재산 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서는 그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併科)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併科) 가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併科) 가능)”으로 그 법정형을 각각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이 법률(「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겠음.

[표 2] 협동조합 관련 유사입법례(자금·재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

구분	대상(행위주체)	범죄 구성요건	법정형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76조제1항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① 목적 외 자금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 ② 조합 등에 손실을 끼친 경우	<u>10년/1억원</u>
농업협동 조합법 제70조제1항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	① 목적 외 자금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 ② 조합 등에 손실을 끼친 경우	<u>10년/1억원</u>
산림 조합법 제30조제1항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	① 목적 외 자금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	<u>10년/1억원</u>
신용협동 조합법 제99조제1항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	① 목적 외 자금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 ② 조합 등에 손실을 끼친 경우	<u>3년/3천만원</u>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5조제1항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	① 목적 외 자금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 ② 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u>10년/3천만원</u>
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38조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①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 처분	<u>3년/2천만원</u>
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제1항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	① 목적 외 자금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 ② 조합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u>7년/7천만원</u>

문 의 처
02) 6788-5463